

입법정책브리핑

Legislation & Policy Briefing

제2023-4호

발행일: 2023. 5. 9. (화)

제405회 국회(임시회, 2023. 4. 1. ~ 2023. 4. 30.)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은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정책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 차

1. 개관

2. 주요 법정정책 이슈

가. 중소·벤처기업 육성

나. 재외동포 지원 강화

※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인용문과 그림 및 도표의 출처는 링크된 원문입니다.

1. 개관

제405회 국회(임시회)는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30일간 진행되었으며, 4월 27일 열린 제5차 본회의에서 모두 22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4월 13일 개최된 제4차 본회의에서도 4건의 법률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제405회 국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주택을 경·공매로 매각 시 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를 가능케 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규정하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법률안, (3)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하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4)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하는 등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한편 제405회 국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으로는 (1) 노인·장애인 학대보호 권고기준을 수립하는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 통합신공항 건설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법률안, (3) 군 공항 이전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제405회 국회의 2023년 4월 13일과 4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26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	정무위원회(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2	외교통일위원회(1)	재외동포기본법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3	국방위원회(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 의원 등 10인
5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국방위원장
6	행정안전위원회(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3)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이용호 의원 등 10인
11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이용 의원 등 10인
12		국가유산기본법안	배현진 의원 등 11인
1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1)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이양수 의원 등 11인
1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3)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6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 의원 등 11인
17	보건복지위원회(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18		간호법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2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의원 등 15인
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의원 등 15인
23	국토교통위원회(4)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2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 의원 등 10인
2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의원 등 59인
26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 육성, 재외동포 지원 강화 이슈를 다룹니다.

2. 주요 법정책 이슈

가. 중소·벤처기업 육성

개요

윤석열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해 피해구제 강화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적 걸림돌을 찾아 제거하고, 전방위 스타트업 성장 가속 프로그램 도입, 사업전환 및 재도전 환경 개선 등을 주요한 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최근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 등 여러 논란을 야기한 법안들을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목표로 통과시켰습니다.

2023년 4월 27일 본회의에서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하는 등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p>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벤처기업은 창업자의 경험과 철학, 노하우가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데, 현재의 벤처기업 생태계에서는 대주주의 경영권이 불안하여 창업정신이 훼손될 수 있음. 따라서 벤처기업이 지배권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로 인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대규모의 투자 유치로 인하여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3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1주마다 복수의결권이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을 창업주에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창업주의 복수의결권주식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상속 또는 양도하거나 이사의 직을 상실하는 등의 경우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하며, 이사의 보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 등의 사항에</p>	2023-04-27 (원안가결)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2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p>관하여는 복수의결권주식도 1주마다 1개의 의결권만 가지도록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등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에 따른 예상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가. 사업전환의 범위에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제품·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함(안 제2조). 나. 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 사업전환 선도기업의 선정 등 사업전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전환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다.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업무에 사업전환 전문가 육성, 사업전환 선진기법 및 교육프로그램 보급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6조). 라.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그 대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거나, 2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등의 경우에 일괄 승인할 수 있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도입함(안 제8조의2 신설). 마.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국내외 판로확보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29조의2 신설). 바.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중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3 신설). 사. 사업전환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사업 및 승인기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4 신설). 아. 신사업 분야 사업전환 승인기업의 경우 사업전환절차 원활화를 위하여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안 제30조의2 신설).</p>	2023-04-27 (원안가결)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중기부)

과제목표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근본적 경쟁력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성과창출형 정책으로 전환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적 걸림돌을 찾아 제거하고, 기업성장의 핵심요인 생산성·기술경쟁력 향상을 견인

주요 내용

(혁신성장형으로 정책개편)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기업의 혁신성·성장성 측면에서 전면 재평가하여 성장형 프로그램에 재배분

[120대 국정과제] 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중기부)

과제목표

창업부터 실제 사업화 성숙 단계까지 완결형 패키지 정책을 구축
모태펀드 규모 확충을 통해 민간 모험자본의 마중물 역할 강화
전방위 스타트업 성장 가속 프로그램 도입, 사업전환 및 재도전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

주요 내용

(대학 창업 요람화) 대학을 창업 요람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거점대학-신산업벨트를 연계하여 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 확대

<p>-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정책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지원체계 구축</p> <p>(성장 저해 걸림돌 제거) 기업승계 제도 합리적 개선(업종 및 사후관리 요건 등),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 확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등 추진</p> <p>(스마트 제조혁신) '제조 디지털 전환 클라우드 플랫폼(DTaaS)' 구축 및 스마트공장(미래형 선도 스마트공장 등) 추가 보급</p> <p>(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중소기업 전용 R&D 대폭 확대, 「중기 연구장비 리스뱅크」 구축·운영,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SW·데이터 등 디지털 인력 10만명 양성</p> <p>(금융·수출·판로 패키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 수출 물류비 지원 강화 및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구축, 공공분야의 혁신제품 구매 자율성 강화</p> <p>(지역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 초광역권 선도기업 육성, 지역혁신기관(TP, 창경센터 등) 연계 강화, 지역별 위기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역인재 정착지원</p>	<p>(신산업분야 육성) 신산업 분야 창업지원을 위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및 '민간주도 예비창업 프로그램' 신설, 'TIPS 프로그램' 확대</p> <p>(벤처투자 활성화)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청년·여성 창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M&A 투자제한 완화 등 벤처투자 생태계 고도화</p> <p>(스케일업 지원) 해외 현지 창업 인프라 확충 및 스케일업 정책자금, 기술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가동</p> <p>(규제자유특구 고도화) 기업수요에 따른 자유로운 특례 이용을 확대하는 자율참여 방식의 '규제자유특구 2.0' 추진, 특구 내 인프라·R&D 지원 확대</p> <p>(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권역별로 혁신기업의 지역 유치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한 혁신특구를 지정하고, 투자·규제특례 등 전폭 지원</p> <p>(재도전 환경 조성) 중소기업이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하도록 사업전환 체계를 선진화하고, 중소기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재도전 기반 조성</p>
--	--

▼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2022. 6. 16.)

[3] 중소·벤처기업 육성

◇ 중소·벤처기업이 민간 중심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적극 뒷받침

1] 자생적 성장 및 혁신기반 조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 패러다임 전환

- (성장·혁신지원) 기존 생존 중심에서 자생력·경쟁력 제고·혁신 성장 등에 집중 지원
 - 전 부처 중소기업 재정지원사업·정책금융을 혁신성·성장성 관점에서 평가*하고 혁신형·성장형 지원 프로그램 비중 확대
 - *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제도 개편 방안' 마련('22.下)
 - 혁신성·성장성 중심 정책금융을 위한 정책금융 공동기준 개편('22.12월)
 - R&D 재정지원을 고성장기업 스케일업 지원 중심으로 개편
- (신산업 진출 지원)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지속 확산 및 사업전환 인정범위* 확대
 - * (현행) 타업종 전환+업종추가시 인정 → (개선) 동일업종내 신사업 전환 등 인정

② 역동적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 **(혁신창업)** 민간 주도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
 - 창업 준비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을 확대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 등으로 오픈 이노베이션 확산
 - '先 민간투자-後 정부지원' 방식의 TIPS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가칭 민간주도형 예비창업 프로그램' 신설('22.3/4)
- **(스케일업)** 신시장 개척, 우수인재 확보를 통한 스케일업 지원
 - 신시장 진출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초격차 스타트업' 등 신산업 분야 선도기업 발굴·지원 확대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예 5천만원→2억원) 등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 **(투자순환)** 민간의 벤처투자 유인 확대 등 순환 체계 강화
 - 세컨더리 펀드 확대 조성, 인수합병(M&A)·기업공개(IPO) 관련 규제 개선 등 회수시장 활성화 추진
 - 복수의결권 도입 등 안정적 경영 여건 조성 및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등 펀딩방식 다양화를 통해 투자생태계 강화
- **(글로벌 유니콘 육성)** 유망 벤처기업의 체계적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가동, 글로벌 벤처캐피탈 연계 등을 통해 세계 일류 수준의 기업을 집중 발굴·육성
 - K-스타트업 센터 등 해외 현지 창업인프라를 통해 우수 벤처·창업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윈스톱 지원
- **(재기 지원)** 창업·벤처의 원활한 재도전·재기를 위해 창업자 간 상호부조 방식의 공동 프로그램 도입 검토

출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022. 6. 1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23년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2022. 12. 21.)

- **(사업전환)** 중소기업 사업전환 인정범위 확대 추진
 - * (현행) 표준산업분류 기준 새로운 업종만 허용 → (개선) 동일 업종 내 새로운 제품·서비스 도입, 비즈니스모델 변경 등도 인정

출처: [2023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중소벤처기업부, 2022. 7. 12.)

② 모험자본과 인재 유입을 통한 벤처 성장 가속화

① **(모험자본 확대)** 모태펀드가 약 1조원 출자하여, 2조원 이상의 벤처 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등 민간 벤처투자 유인을 위한 마중물 공급

- 초기기업 투자시 인센티브 강화('22.3),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의 벤처펀드 결성요건 완화*('22.상) 등 창업초기투자 강화

*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 (현재) 20억원 → (개정) 10억원

② **(인재 유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상향, 과세이연 확대 등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표준계약서·메뉴얼 등 보급·교육('22.상)

* 비과세 한도를 상향(3천만원 → 5천만원)하고, 시가 이하로 발행된 스톡옵션에도 과세이연 허용 등(개정 「조특법」 '22.1 시행 예정)

- 기업이 직접 선발·교육하는 현장실습형 훈련과정인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를 정식 출범하여 1,200여명 훈련 추진('22.상)

③ **(스케일업 지원)** 성장을 위한 전용자금('22. 1.62조원) 등을 포함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총 31.6조원의 자금공급('22.1~)

* 중진공 융자 5.1조원, 기보 보증 26.5조원

- 유니콘기업으로 육성을 위해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한도를 2배 상향(100→ 200억원)하는 등 'K-유니콘 프로젝트'의 고도화 추진

④ **(제도적 기반 마련)** 「벤처기업법」의 일몰기한을 폐지(現 '27년, ~'22.12)하고 복수의결권 도입 추진('21.12 국회 산중위 통과)

- 투자조건부 용자·조건부 지분전환계약 등 美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활용되는 투융자 복합금융 제도 도입(「벤처투자법」 개정, '22.상)

⑤ **(외수시장 활성화)** M&A펀드('21. 2.2 → '22. 2.35조원, 누적) 및 중간회수펀드(1,000억원 신규)를 조성하고, M&A 관련 투자제도 개선*('22.하)

* M&A 펀드에 한해 상장법인 투자제한 완화, M&A 목적 SPC 설립시 피인수기업 대주주 등의 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 등(「벤처투자법」 개정)

① 중소기업 사업전환을 통한 신산업 진출 지원

① **(대상 확대)** 사업전환 범위를 기존 업종전환에서 신사업 분야 유망 품목·서비스 도입, 사업모델 혁신까지 확대(「사업전환법」 개정, '22.상)

* (기존) 업종전환 및 업종추가 → (확대) 새로운 제품·서비스 및 제공방식 도입까지 인정

② **(지원 강화)** 사업전환자금을 대폭 확대('21. 1,000 → '22. 2,500억원)하고, 대·중기 및 중기간 공동사업전환 제도* 신설

* 대중소기업,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전환을 통해 성공가능성 제고 및 상생협력 촉진

③ **(규제 해소)** 중소기업 음부즈만과 연계하여 신사업 진출 과정에서의 규제 및 현장의 애로를 발굴하고 신속한 규제 개선 지원

④ **(체계 정비)** 중소기업의 사업전환과 노동전환을 연계한 원스톱 지원*을 위해 구조혁신지원센터 신설('22. 10개소)

* (홍보·수요발굴) 협단체·TP·노사발전재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수요기업 발굴 → (진단컨설팅) 기업 진단 및 전환계획 수립 지원 → (연계지원) 자금 등 지원사업 연계

출처: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참고 자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정민 의원안: 사업전환 지원범위 확대 및 지원체계 정비 등](#) 2021. 11.

[권철승 의원안: 사업전환지원센터에 전문가 육성 업무 등 추가](#) 2022. 9.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영 의원안: 차등의결권주식 발행근거 마련](#) 2020. 9.

[정부 제출안: 복수의결권주식 발행근거 마련](#) 2021. 2.

[김병욱 의원안: 복수의결권주식 발행근거 마련](#) 2021. 9.

[양경숙 의원안: 차등의결권주식의 발행 근거 마련](#) 2020. 7.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이 벤처기업 연구개발투자에 미칠 영향 분석](#) 중소기업부 누리집

[2016사업전환성공사례집](#) 중소기업부 누리집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를 위한 사업전환촉진법 개정용역](#) 중소기업부 누리집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대한 복수의결권주식 허용 입법, 국회 통과](#) 중소기업부 보도자료

[벤처기업 차등\(복수\)의결권주식 도입, 쟁점과 과제는? - ① 벤처기업 성장과 의결권\(議決權\)주식 -](#)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2020. 12. 29.

■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견인을 위한 수단으로 ‘차등(복수)의결권 주식’의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차등(복수)의결권주식은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로서 주당 의결권의 수(數)가 복수로 부여되는 주식임

- 이 주식의 발행은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와 모험자본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함

- 이를 발행하여 기업성장을 제고한 사례로는 Google, Facebook, Alibaba와 같은 글로벌 혁신기업들을 들 수 있음

■ 그러나 국내에서는 「상법」 상 주주평등의 원칙(1주 1의결권)으로 인해 차등(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이 제한됨

- 제21대 국회에서는 이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다수의 개정법률안(「벤처기업법」 2건, 「상법」 3건)

이 발의된 상황임

- 또한 정부도 최근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음

■ 관련한 입법 시에는 이 주식의 적정수와 상한비율, 일몰사항, 소수 주주 보호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부작용

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함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활용 가이드라인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정책연구 21-07 2021. 12. 31.

□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2020년 12월 23일에 발의한 「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제로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고찰

○ 연구의 범위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상 복수의결권주식제도에 대한 구체적 고찰과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최근 해외 사례, 벤처기업법 개정안 축조해설을 포함

○ 또한,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시 정관 개정, 주주총회 개최 등에 사용되는 「상법」 등 관련법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주요 쟁점도 필요하면 논의에 포함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방안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정책연구 20-33 2020. 12. 31.

현재 중소기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내·외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사업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할 때에 기존의 기술 경쟁력과 인프라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업종 부문에 참여하면서 위기환경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6차례에 걸쳐 사업전환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지속적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의 효과적 사업전환 및 사전적 구조개선 지원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적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나아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주식 제도에 관한 연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연구 19-22 2019. 12.

차등의결권주식이란 의결권이 1개 미만이거나 복수인 주식을 말하며, 이때 전자를 부분의결권주식, 후자를 복수인 복수의결권주식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대표적 기술혁신기업인 구글이 2004년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하여 창업자의 지배권을 유지하면서 상장에 성공한 이후 소위 신산업분야 기술혁신기업의 차등의결권주식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졌다. 현행 상법상 종류주식제도가 창업기업 내지 창업 직후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 당사자들의 자금조달 수요를 충족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현 시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차등의결권주식제도 도입은 적대적 M&A로부터의 경영권방어 차원에서 논의되었으나, 재벌의 경영권세습 등 부작용을 우려하여 찬반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최근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차등의결권주식제도에 대한 도입 필요에 대한 목소리가 현장에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고 자금조달의 유연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차등의결권주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장점을 극대화하고 재벌의 경영권세습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대안 제시를 본 연구에서 하고자 한다.

나. 재외동포 지원 강화

개요

정부는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이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재외동포사회와 소통 강화 ▲체계적 재외동포 정책 추진기반 마련 ▲모국과 동포사회 네트워크 강화 ▲차세대 재외동포 인재발굴 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재외동포청 설치로 재외동포의 권익이 신장되었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재외동포청 업무의 효과성 제고와 원활한 업무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간 협업 시스템 구축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외동포 대상 국내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3개년간('23~'25년) ▲여권정보 기반 해외체류 국민을 위한 비대면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 ▲영사서비스 통합포털 기반 온라인 영사민원 서비스 확대 등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 실현 노력이 우리 동포의 권익과 지위 향상으로 이어지고, 글로벌 한민족 공동체가 모국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 발맞추어 재외동포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3년 4월 27일 본회의에서는 재외동포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설치 및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외교통일위원회	<p><u>재외동포기본법안(대안)</u></p> <p>세계 각지에 730만여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현재 대통령 훈령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의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고 추진·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1996년 출범 이후 개최 실적이 단 19차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2018년 이후로는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회의 진행도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여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체계적·종합적으로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p>	2023-04-27 (원안가결)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외교부)

과제목표

재외국민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튼튼한 사회 안전망 구축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며 재외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비대면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주요 내용

(재외국민 지원 및 보호 강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해외 위난 및 사건사고 대응 역량 제고

-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인력·예산 확충 및 제도 정비, 대국민 홍보 및 소통 강화

(재외동포 지원 강화) 재외동포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별, 분야별, 세대별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강화

-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재외동포청 설치를 적극 지원

(비대면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재외공관 방문 없이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영사서비스 제공

- 재외국민용 비대면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 추진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외교부, 2022. 7. 21.)

□ **동포사회의 포용적 발전을 위한 지원 체계 내실화**

- 동포사회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재외동포정책 수립**
 - 재외동포사회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별, 세대별 동포사회 현황 및 사업 수요에 기반한 지원사업 실시
- **역사적 특수동포** 등 지원을 위한 제도적, 법적 개선 추진
 -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사업 내실화, 사할린동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한 **사할린동포 지원제도** 개선
- 국회의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지원 및 참여
 - 재외동포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의원 발의안에 대한 부처간 의견수렴 및 조율 등 의원입법 지원
-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통한 정책 조율기능 강화
-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 지속 추진

출처: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2023 정부 업무보고(외교부, 2023. 1. 11.)

⑦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핵심목표 : ① 해외 사건사고 및 위난상황 대응 체계 고도화
② 재외동포청 신설 및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③ 재외동포 원스톱 영사민원서비스 기반 조성

□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협업·협력 체계 강화**

- 해외 위난 상황에서 실전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도상 훈련(선박 침몰 상황) 실시
- 민간전문가 활용 「재외국민 지킴이」 사업* 본격화 / 대학 내 영사 분야 교과목 개설 지원 및 영사협력원 운영 확대
- * 외교부 직원과 분야별(자연 재난, 테러, 강력범죄 등) 민간전문가가 합동 출장하여 현지 안전 여건 평가 및 재외공관 대응 체계 개선방안 모색

□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한 적시성 있는 대응**

- 북미·유럽(혐오범죄) 및 기니만 연안(해적피랍) 관련 지역회의 개최를 통한 재외공관 대응 역량 강화
- 마약 합법화 국가(태국, 캐나다 등) 방문·체류 우리 국민 대상 예방 및 홍보 강화

□ **재외동포청 신설 및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 재외동포청을 설치하여 730만 재외동포의 권익이 명실상부 신장 되었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는 조직으로 출범
 - ※ 지역별 맞춤형 동포정책 시행, 국내와 동일 수준의 범정부 영사민원서비스 제공
- 재외동포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시행을 위한 기본법 제정 / 동포 사회 안정적 발전, 한인 정체성 강화 등 정책 추진 체계 법제화

□ **비대면 기반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재외동포·국민 편의 향상**

- ▲ 실물 여권 기반의 해외 체류 국민 본인확인 서비스 ▲ 디지털 영사 서비스 통합포털 구축('23년부터 3년간 단계별 추진) / 끝/

출처: [2023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참고 자료

재외동포기본법안 검토보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해철 의원안: 제정안의 주요내용 및 구성 등](#) 2020. 11.

[김석기 의원안: 제정안의 주요내용 및 구성 등](#) 2021. 11.

[6월 '보훈부·재외동포청' 출범...19부·3처·19청 체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21년 재외동포현황](#) 외교부 누리집

[2021년도 고려인동포 지원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외교통일위원회 누리집

[재외동포의 이주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중남미 디아스포라 국민외교: 아르헨티나 한인디아스포라의 코로나19 방역 연대활동을 중심으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1-11 2021. 8.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아르헨티나 한인디아스포라 공동체의 현지사회와의 연대 사례를 통해서 대(對)중남미 외교의 주체로서 디아스포라의 활용을 제안하는 데 있다.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이슈페이퍼」 2022. 10. 31.

제15대 국회에서부터 제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재외동포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기본법 제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정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제정 가능한 재외동포기본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임.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현재까지의 입법노력, 쟁점 사항들을 분석 평가하여 최적의 입법 내용을 도출하고자 함.

(사)지평법정책연구소 ·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대표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이춘희 선임연구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지평법정책연구소 · 지평 공공정책팀 입법정책브리핑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